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49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박충권

조은희 • 권영진 • 김기웅

권성동 • 박성민 • 강선영

서삼석 · 이양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약들이 다수 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이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의 피해가막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포함시키고, 국내 농 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법률 제 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2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통상조약이 국내 농 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보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3 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	<u>외교통일위원회·산업</u>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및 통상 관런 특별위원회의 요	<u>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u>	
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생 략)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	②	
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u>	
<u>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u>원회</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	
의 의견제시) ①·② (생 략)	의 의견제시)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 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 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 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국내 농약	섭 • 축
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역	경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독	<u> 간되는</u>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	<u></u> 보
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중2	<u> 소벤처</u>
기업위원회 및 농림축산	식품해
양수산위원회는 제2항 및	<u> 제3</u>
<u>항</u>	
세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1 -
산업통상자원중소병	<u>벤처기</u>
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	품해양
수산위원회(통상조약이	국내
<u>농업 · 축산업 · 수산업에</u>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및 제15조제1항에서 같다	<u>+)</u>

② (생략)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 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u>처기업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
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 4 (혀했과 같음)

- Ⅰ. ∼ 4. (현행과 샅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